빅블러시대와 커스터디언 기능의 발전방향*

이효경(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시작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금융 산업에서는 특히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이다.[1]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금융과 결합하고,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에서 금융과 산업간 융합 촉진 등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2] 또한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의 경우 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3]

최근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모든 형태의 IOC를 금지한다고 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4] 따라서 가상자산업자는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정비가 필요하며,[5]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6]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7] 커스터디(custody)업무란[8] 증권투

---

*본 고는 미완성된 발표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위원회,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안건, 2022.7. 1면.
2) 금융위원회,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1면.
3) 금융위원회,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1면.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2019.1.13., 4면.
5) 금융위원회,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4면.
6) 금융위원회,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9면.
7)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Coinmarketcap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은 2021년 4월 2조달러를 넘기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주요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2020년 말까지 1조 달러 미만이었으나 2021년 들어 대폭 상승하여 2021년에 5월 12일에는 최고치인 2.5조 달러를 기록,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였으나 7월 19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1년 7월말 1.6조달러 수준이다. 한아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자본시장포커스」2021-16호, 2021.1면.
8) 杉浦宣彦·渋谷 彰久(번역:윤영신·류호중), “커스터디 업무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에 관하여”,「BFL」제17호, 2006.5, 90-91면. 본 논문 각주3)에서는 용어를 이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커스터디(Custody=상임대리인제도)’, [커스터디언(Custodian=상임대리인·보관기관)]는 실무상의 용법. ‘상임대리인(-계약·-제도)’은 법률상의 용법. ‘상임대리인’을 Standingproxy의 역어로 한 경우도 있다. 해외의 제도는 단순히‘커스터디’라 칭하기로 한다. 국내 문헌에서 커스터디의 개념에 대한 杉浦宣彦·渋谷彰久논문의 커스터디 개념의 인용은 허항진, “국제적 증권보관의 법적 과제에 관한 소고”,「경영법

자를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수취결제·권리보전·의결권행사 등의 폭넓은 업무를 제공하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말한다(이 대리인의 업무에는 일정한 사항에만 대리권한이 부여되는 한정대리인과 포괄적인 대리권한이 부여되는 상임대리인의 2가지 유형이 있다).[9]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동일인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칭하여 커스터디언이라고 한다.[10] 커스터디언은 고객인 투자자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 보관뿐 아니라 배당금의 수령이나 원리금의 추심, 신주예약권 및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 유가증권 보유자로서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11]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채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임대리인, 커스터디은행(Custodian Bank, 보관기관),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환거래은행 등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 국내보관기관을 이용하여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먼저 우리나라 내에서 제반 수속 및 업무 등을 대행해 줄 상임대리인 및 취득한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보관기관을 선임한다.[13] 커스터디은행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증권보관, 투자자계좌부 관리, 환전, 증권 및 대금결제, 원리금 수령 및 원천징수, 증권 및 자금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임대리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증권을 보관하는 기관 중에서 계약을 통해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득증권 권리행사 외에도 외국인투자등록 신청, 거래기관 명의의 매매위탁계좌 개설, 금융감독원 앞 보고 등을 대행한다.[14][15]

이와 같이 금융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공해 왔던 커스터디 서비스는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여 주는 것으로 상임대리인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구매해 주거나, 암호화키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16]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신설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한 논의들이 급진전되고 있지만,[17]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커스터디 업무를 겸영할 수는 없으므로[18] 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19][20] 하지만

률」제19권 제4호, 2009, 335면.
9) 杉浦宣彦·渋谷 彰久(번역:윤영신·류호중), 앞의 논문, 91면.
10) 杉浦宣彦·渋谷 彰久(번역:윤영신·류호중), 앞의 논문, 91면.
11) 杉浦宣彦·渋谷 彰久(번역:윤영신·류호중), 앞의 논문, 91면.
12) 한국은행, 2021년 한국은행의 증권업무해설(2021.7개정판), 301면.
13) 상임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한국은행 등으로 한정된다(「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한국은행, 앞의 책, 301면.
14) 한국은행, 앞의 책, 303면.
15) 이러한 금융권의 커스터디 서비스는 '관리 및 자금결제'에 관한 업무에서 시작하여 점점 확대되었는데, 유가증권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이를 위한 자금결제 업무는 금융권(특히, 은행)이 본래부터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기본적인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였다. 그러나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어, 수탁된 유가증권에 대한 조세당국에 대한 신고,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대리 행사, 나아가 유가증권의 대여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윤주호,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현황과 전망"(https://newsroom.koscom.co.kr/25686)(2022.12.10.방문).
16) 한아름, 앞의 글, 1면.
17) 윤주호, 앞의 글, 2면.

앞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허용되면 합작법인 설립 지분 참여를 넘어 커스터디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21]

또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신탁업자의 수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위탁고객이 신탁법상 위탁자로서 가지는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22]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1호-7호)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수탁가능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23]

물리적으로 보관가능한 수탁자산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수탁자산에 대한 고객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하며, 위탁받은 가상자산이 신탁법상 수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업자가 고객을 위해 보호하는 가상자산이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지 불분명하다.[24]

한편 미국,[25] EU,[26] 스위스,[27] 싱가포르[28] 등 암호자산[29]에 관한 선진국에 있어서는 신탁은

---

18) 은행이 은행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행이 직접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지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은행과 산업자본과 분리라는 측면에서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 대해 15%를 초과하여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지만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내에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중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부수업무이다. 겸영업무 대상은 금융업 등 제한적인데 반해 부수업무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경제전반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이 은행업을 포함한 금융업 밖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정수, "은행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4권 제1호, 2020.3, 382면.

19) 한아름, 앞의 글, 3면.

20)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융화는 금융업에서 비금융업으로, 그리고 비금융업에서 금융업으로 양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금융업에서 비금융업으로의 진출은 부수업무의 확대나 자회사를 통한 진출의 형태가 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금융업에서 비금융업으로의 확장은 전통적인 금융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며, 부수업무의 해석에 있어 여전히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상사법연구」제40권 제3호, 2021, 214면.

21) 오정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금융규제의 새로운 전환"(https://newsroom.koscom.co.kr/32383) (2022.12.10.방문).

22) 김갑래·김준석,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27, 2021.11.22., 14면. 은행은 이와 같은 규제를 감안해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때 은행 부수업무로 가상자산 수탁업무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가상자산 진출 노리는 은행권, 커스터디 사업에 초점"(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7271632329240104255) (2022.12.10.방문).

23) 정순섭, "블록체인과 금융", 「BFL」 제108호, 2021.7, 28면.

24)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지갑서비스업자의 고객자산보호의무가 불명확하고, 가상자산을 위탁한 고객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에 따라 고객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가 고객자산의 암호키를 관리하며 수탁업무를 함에 있어 제도화된 정책 및 절차가 불확실하여 수탁자산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 고객의 가상자산 지갑이 해킹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갑래·김준석, 앞의 글, 14면.

25) 미국에서는 2021년 11월 대통령직속 금융시장워킹그룹(PWG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STABLECOINS)」를 공표하였다.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454)(2022.12.4.방문).

행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의 암호자산의 커스터디나 암호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행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0] 해외 대규모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보관하거나 신탁을 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금융기관내부에서 암호자산의 암호키의 보관이나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잘 사용하여 안전하게 커스터디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올리고 운영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이다.[31]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의 신탁 등 서비스제공을 행함으로써 신상품개발이나 금융기관의 수익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국내에서 신탁은행 등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하지 못함으로써 장래적인 수익력·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32]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참여 사업자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33] 그러나 이는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고객을 보호하는 기능이 되기는 어렵다.[34] 커스터디 산업

---

26) 2020년 9월 24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핀테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금융 위험을 완화해 유럽 경제의 금융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패키지(New Digital Finance Package)를 채택하여 새로운 금융 패키지에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입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법안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MiCA 문서는 현재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인 CASP(Crypto Asset Service Provider)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2년 6월 30일에 EC,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27개 회원국은 2년 만에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 법안에 합의하였고, 2024년 시행 예이다. MiCA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한다. Council of the EU, 2022. 6. 30, Digital finance: agreement reached on Europea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Press release.; 신경희, "EU의 가상자산시장(MiCA)법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포커스」 2022-18호, 2022.1면.

27) 스위스에서는 일찍이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하였으며 본토벨뱅크(Vontobel bank)는 은행 최초로 은행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직접 디지털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위스 주은행인 바슬러 칸토날방크(Basler Kantonalbank)도 스위스 정부소유 은행 최초로 자회사인 뱅크 클러(Bank Cler)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아름, 앞의 글, 2면.

28) 싱가포르의 경우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 2019)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시장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스터디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취급업소 책임하에 전문 커스터디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권 속으로②]앞서 나가는 홍콩·싱가포르 '투자 천국(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1050313225125400) (2022.12.10.방문).

29) 암호자산(crypto asset)은 그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디지털정보로 구성되고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가치가 저장·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따라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외국문헌에는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 디지털통화, 디지털코인,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외국의 입법례 등을 인용하는 경우 그 문헌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박준·한민, 금융거래와 법(제3판), 박영사, 2022, 1170-1171면.

30) 後藤 出·畠山久志, デジタル化社会における新しい財産的価値と信託, 2022.3, 31頁.

31) 後藤 出·畠山久志, 앞의 책, 31頁.

32) 後藤 出·畠山久志, 앞의 책, 31頁.

33) 이원부, "글로벌 금융권 커스터디 산업의 현황과 추세" (https://newsroom.koscom.co.kr/31029?print=pdf) (2022.12.10.방문).

34) 관계부처 합동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2021.5.2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45)(2022.12.10.방문)은 특정금융정보보상 가상자산사업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금지아 가상자산 보관강화(콜드월렛보관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 적용)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 수탁 자산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35] 본 고에서 디지털가상자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객 수탁 자산보호의 동향과 지금까지 시스템 리스크나 다른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신탁은행에 암호자산 커스터디업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 10월에 신탁은행에게 암호자산 신탁수탁비즈니스(커스터디업무)를 해금한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II. 디지털 자산 규제와 커스터디업의 해외 입법례

1. 미국의 민간 디지털자산의 규제와 수탁에 의한 커스터디 서비스[36]

2019년 페이스북(Facebook)의 리브라(Libra, 現 Diem) 발행계획[37]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38]에 관련한 규제감독상 대응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9] 2020년 10월에 G7 스테이블코인 실무그룹과 금융안정위원회(FSB)[40]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파급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감독 및 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41] FSB는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여부를 점검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면서 "동일비즈니스, 동일 리스크에는 동일규제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s)"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42]

미국에서는 2021년 11월 대통령직속 금융시장워킹그룹(PWG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STABLECOINS)」를 공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보호를 도모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제시하고 있다. 박준·한민, 앞의 책, 1231면.

35) 이원부, 앞의 글, 5면.

36) 본 내용은 최승필·이효경, 코로나19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연구, 법제연구원, 2022, 111-117면 인용.

37) 리브라(現 디엠)의 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2022.1.22, 27면.

38) 통상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하, FATA라 함)는 동 보고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지칭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결과", 2020.7.2., 2면.

39) 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공개(2019.10.18.)하였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보도참고자료,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2019.10.

40) FSB는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제의로 1999년에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모태이다. 당초 G7 국가, 호주 등 12개 회원국 및 IMF, BCBS 등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금융안정위원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0)(2022.6.23.방문).

4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2022.1.), 27면.

42)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Stage 3 roadmap, 13 October 2020(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131020-1.pdf) (2022.6.23.방문).

하였다.[43]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PWG가 제시하는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은 잘 설계되고 적절히 규제될 경우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44]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준비자산의 가치 및 유동성 감소, 준비자산에 대한 안전망 부재, 불명확한 상환 조항,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 등이 있을 수 있다.[45]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대량 상환이 청구되는 일종의 "코인 런(run)"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전망만으로도 촉발될 수 있다.[46] 더 나아가 코인 발행사가 상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코인 런이 자금 시장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고, 동 현상이 다른 스테이블코인이나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전염 현상이 나타날 우려 또한 존재한다.[47] 스테이블코인 런의 잠재적 영향은 해당 코인 준비자산의 규모와 유동성,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금융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코인 런은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48]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49] 또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이 갖는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하며,[50] 보다 많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함으로써 규모가 커지고 독과점화 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 및 경제력 집중 등에 취약하다.[51] 현재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응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의 틀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기존 법률과 규제를 회피하여 이루어질

---

43)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454)(2022.5.4.방문).

44) 이순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금융브리프』, 제31권 제1호(2022.1.7.), 13면.

45) 미국「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 소개는 이소영,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Report on Stablecoins) 주요 내용 및 시사점",『금융리스크리뷰』, 2021년 겨울 제18권 제4호(2022.2.28.), 44면.

46) 이소영, 앞의 글, 44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2.

47) 이소영, 앞의 글, 44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2.

48) 이소영, 앞의 글, 44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2.

49) 이소영, 앞의 글, 44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2.

50) 이소영, 앞의 글, 44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2.

51) 이소영, 앞의 글, 44면.; 이순호, 앞의 글, 13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4.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52]

나. PWG가 제시하는 제안사항

2021년 11월 PWG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보고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연방의회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와 감독체계의 정비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53]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관련 기초자산으로서의 환불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예금보험에 가입한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보관·관리하는 기관도 연방정부의 감독 대상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4] 또한 시장 독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나 거래데이터의 공유 등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5] 시스템 위험과 경제적 집중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 기업과 다른 기업의 제휴와 전자지갑업자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 이용 등을 제한하며, 감독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56]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실시한다면 규제차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리스크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성립될 때까지의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로서 기존의 규제·법안·권한에 근거한 각종 리스크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57]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미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방법상의 규제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가이드라인이 있다.[58] FinCEN의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은행비밀법(BSA : Bank Secrecy Act of 1970)[59]상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로 판단하여 FinCEN이 정하는 Money Service Business에 포함되기 때문에 FinCEN에 등록해야 하며,[60]

---

52) 이소영, 앞의 글, 45-46면.; 「Report on STABLECOINS」2021.11」,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8.22.방문), p15.

53) 곽선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제31권 제3호(2022.1.22.), 29면.

54) 곽선호, 앞의 글, 29면.

55) 곽선호, 앞의 글, 29면.

56) 이소영, 앞의 글, 46면. ; 이상의 내용 원문은 Report on STABLECOINS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6.23.방문), pp.2-3.

57) Report on STABLECOINS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2022.6.23.방문), p.18.

58) 정지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0-03호, 2020.2, 2면.

59) 1970년에 자금세탁 및 다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자금서비스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를 포함한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며, §103.41에서 자금서비스업자에 대한 등록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적용대상은 §104.11(uu)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은행, 보험, 카지노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자금서비스업의 특별규정과 자금서비스(§107.41)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 121면.; 이효경, "미국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1권 제3호(2017.9.30.), 501면.

60) 31 U.S.C. §5330

자금세탁방지 의무준수,[61] 의심거래보고[62]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63] MSB(money services businesses)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자금세탁이나 테러활동의 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구축된 리스크 기반의 효과적인 AML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4] AML 프로그램은 MSB를 실시하는 장소, 규모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과 양을 근거로 리스크에 적합한 것일 필요가 있다. FinCEN은 BSA에 기초하여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규제 제정권 및 규제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65] 의심스러운 거래는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기입하고 보충자료를 수집, 보관함으로써 FinCEN이 지정하는 먼저 SAR를 제출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파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MSB는 제출한 SAR 및 보충자료 원본 또는 동등한 것을 SAR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66]

다. 뉴욕(NY)주법

주법상 규제로 대표적으로 뉴욕(NY)주법을 살펴보면, 2015년 6월, 이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이하 'DFS' 라 함)은 뉴욕주의 금융서비스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18-A Financical Services Law)에 기초한 가상자산규제(23NYCR Part 200)[67]를 공표하였다.[68] 2020년에는 DFS는 가상자산 사업 활동의 라이센스 신청자 및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업자 전용으로 라이센스 신청절차(Notice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License Application Procedures)[69]나 가상자산의 채용·리스트에 게재하는 가이던스(Guidance Regarding Adoption or Listing of Virtual Currencies)[70]를 포함한 지침을 공표하였다.[71] DFS는 뉴욕주 가상자산규제에 근거해 가상자

61) FinCEN GUIDANCE May 9, 201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2019-05/FinCEN%20Guidance%20CVC%20FINAL%20508.pdf) (2022.6.26.방문).
62) 31 CFR §1022.300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ttps://www.ecfr.gov/current/title-31/subtitle-B/chapter-X/part-1022/subpart-B/section-1022.210)(2022.6.26.방문).
63) FinCEN, 2013,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Regulatory Guidance, FIN-2013-G001. ; 정지수, 앞의 글, 2면에서 재인용.
64) 31 CFR §1022.210
65) 31 U.S.C. §5318(h)(2), 31 U.S.C. §5318(a)(2)
66) 31 CFR §1022.300
67) Part 200 Virtual Currencies
(https://govt.westlaw.com/nycrr/Browse/Home/NewYork/NewYorkCodesRulesandRegulations?guid=I7444ce80169611e594630000845b8d3e&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bhcp=1) (2022.6.26.방문).
68)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https://www.dfs.ny.gov/virtual_currency_businesses)(2022.6.26.방문).
69) Notice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License Application Procedures
(https://www.dfs.ny.gov/apps_and_licensing/virtual_currency_businesses/gn/notice_vc_busact_lic_app_procedure) (2022.6.26.방문).
70) Guidance Regarding Adoption or Listing of Virtual Currencies
(https://www.dfs.ny.gov/apps_and_licensing/virtual_currency_businesses/gn/adoption_listing_vc)
(2022.6.26.방문).

산 사업 활동의 비트라이센스(Bit License)를 부여하고, 비트라이센스 취득자의 가상자산 사업 활동을 규제·감독한다.[72]

비트라이센스는 뉴욕주 은행법 §100에서 정하는 수탁자 권한(fiduciary powers)을 행사할 수 없다.[73] 뉴욕주 은행법 §100에서 정하는 수탁자 권한(fiduciary powers)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포함된다. 이 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로는 수탁자에 의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있다.

① 재무대리인이나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자금을 수불하고 유가증권의 양도, 등록, 부서를 하거나 개인이나 법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권한

② 저당권 또는 채권의 수탁자로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신탁을 인수하여 집행할 권한

③ 보호자, 관재인, 수탁자, 위원, 미성년자·정신장애인·피후견인 재산의 관리자 및 그 밖의 수탁자 자격으로 또는 파산절차 중인 파산자의 재산이나 유산의 관재인, 신탁, 위원으로서 법원에 임명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권한

④ 사망자의 유언에 기초한 유언집행자나 수탁자 또는 유언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산의 관리인으로 임명되고 그 임무를 수락할 권한

⑤ 어떠한 자로부터 부여, 위탁 또는 위탁받은 모든 신탁, 의무 및 권한을 취득, 수용, 집행할 권한과 그러한 신탁, 의무 또는 권한의 조건에 따라 그러한 신탁, 의무 또는 권한의 대상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수령, 관리, 보유, 처분할 권한

비트라이센스가 대리인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도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74]

뉴욕주법 상 뉴욕주에서 또는 뉴욕주의 거주자에 대해 ① 이전을 위한 가상화폐의 수취 또는 가상화폐의 송신, ②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가상화폐의 보관·관리, ③ 고객 비즈니스로서의 가상화폐 매매, ④ 고객 비즈니스로서의 교환 서비스, ⑤ 가상화폐의 발행·관리·컨트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활동과 관련된 라이센스(Bit License)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75]

비트라이센스 보유자는 가상자산 사업 활동을 실시할 때 ① 자본 요건,[76] ② 고객자산의 보관·보호 의무,[77] ③ AML 의무,[78] ④ 장부작성·보관의무,[79] ⑤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책정의

---

71) Guidance and Notices(https://www.dfs.ny.gov/virtual_currency_businesses)(2022.6.26.방문).
72) 23 NYCRR §200.3(a)
73) 23 NYCRR §200.3(a)
74) 23 NYCRR §200.3(b)
75) 23 NYCRR §200.2 (q)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can fall into one of five types of activities involving New York or New Yorkers:
(i) receiving Virtual Currency for transmission or transmitting Virtual Currency;
(ii) storing, holding, or maintaining custody or control of Virtual Currency on behalf of others;
(iii) buying and selling Virtual Currency as a customer business;
(iv) performing exchange services as a customer business; or
(v) controlling, administering, or issuing a Virtual Currency.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oftware in and of itself does not constitute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76) 23 NYCRR §200.8
77) 23 NYCRR §200.9
78) 23 NYCRR §200.15

무,[80] ⑥사업계속계획 책정의무,[81] ⑦ 광고·권유규제,[82] ⑧ 리스크 등의 공시의무,[83] ⑨ 민원처리방침 책정의무[84] 등의 소정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욕주 가상화폐 규제는 고객자산의 보관 및 보호에 관해 다음 규정을 정하고 있다.[85] 우선 비트라이센스는 고객 보호를 위해 당국이 결정한 형식 및 금액으로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보증증권 또는 적격 커스터디언(Qualified Custodian)에 개설하는 신탁계좌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또한 비트라이센스는 타인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관, 보유하거나 커스터디 또는 컨트롤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타인에 대해 채무 또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과 동일 종류·금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또 비트라이센스는 타인의 지시에 의한 자산의 매각, 이전, 양도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해 해당 라이센스가 보관, 보유, 유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산을 매각, 이전, 양도, 대여,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기타 방법으로 사용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DFS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가상자산 사업 활동에 관해 뉴욕주 가상자산 규제에 근거해 비트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또 뉴욕주 은행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2 Banking)[86]에 근거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한정목적 신탁회사[87]에 인가를 부여하고, 또한 그러한 가상자산 사업 활동 등을 규제·감독한다. 뉴욕주 은행법상 은행 또는 신탁회사로서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는 BitLicense 없이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88]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라. 앞으로의 과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가 파산했을 때의 고객 자산 보호에 관해서 파탄 시의 해결법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환불 방법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은 등 법적 안정성의 명확한 구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PWG가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월렛업자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을 법제상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

79) 23 NYCRR §200.12
80) 23 NYCRR §200.16
81) 23 NYCRR §200.17
82) 23 NYCRR §200.18
83) 23 NYCRR §200.19 (a)~(d)
84) 23 NYCRR §200.20
85) 23 NYCRR §200.9
86)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2 Banking Article 3 Banks and Trust Companies
87) 한정목적 신탁회사라 함은 뉴욕주 은행법의 은행 및 신탁회사(뉴욕주 은행법§2.2)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기관에서 수탁자 권한(fiduciary powers)을 가지지만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https://www.dfs.ny.gov/apps_and_licensing/banks_and_trusts/procedure_certificate_merit_trust_comp) (2022.6.26.방문).
88) BitLicenseFAQs No.12 (https://www.dfs.ny.gov/virtual_currency_businesses)(2022.6.26.방문).

2. 일본

가. 암호자산 커스티드업[89)]

(1)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개념

일본의 자금결제법에서는 관리형의 암호자산교환업으로서 「타인을 위해 암호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자산교환업 유형을 마련하였다(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 4호). 이러한 유형은 업무의 실무상 하나로 상정되는 암호자산의 보관이나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이다.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서는 매매나 교환을 주로 하는 것이 상정되는 일반적인 암호자산교환업과 달리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암호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원칙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특색이 있다. 또 암호자산을 수탁한 이용자로서도 기관투자가 등의 법인을 상정한 특색도 있다.

여기 「관리」에 대해서 「이용자의 관여 없이 단독 또는 관계사업자와 공동으로서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비밀키를 보유하는 경우 등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이용자의 암호자산의 이전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암호자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암호자산가이드라인 I-1-2-2③). 이러한 「관리」를 근거로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실무대응에 관한 다양한 논점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먼저 비밀키의 관리형태 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등록을 요하게 되는가, 위탁처에 대해서도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등록을 요하게 되지는 않는가 등의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암호자산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다중서명(Multisignature)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 등의 분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암호자산에 관한 월렛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이용자가 암호자산의 비밀키를 스스로 관할지 여부, 사업자가 암호자산의 비밀키를 보유할지 여부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 4호에 있어서 「타인을 위해 암호자산의 관리를 하는 것(해당 관리를 업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 대해서 신탁을 사용하여 수행한 경우, 신탁업법 또는 겸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를 행하는 뜻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탁자는 자금결제법에 있어서 상기 제외규정을 적용하여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요하지 않게 된다.

(2) 분별관리의무

자금결제법하에서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탁한 암호자산에 대해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암호자산교환업의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자기의 암호자산과 분별하여 관리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또 콜드월렛에서 관리해야할 암호자산 및 핫월렛과 동종동량의 암호자

89) 河合 健·高松志直·田中貴一·三宅章仁, 暗号資産・デジタル証券法, 2020, 61면 이하.

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결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분별관리의무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개정자금결제법 제63조의11 제2항). 이러한 분별관리의무의 기본적인 테두리로서 장부에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오프라인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는 방법 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 등에서 관리하게 된다(암호자산교환업자부령 제27조 각항).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서는 매매형의 암호자산교환업과 달리, 암호자산에 관한 거래 등을 상시실시할 필요성은 없다. 이 때문에 내각부령의 테두리는 매매형과 구분되지 않지만 실무상 취급으로서는 콜월렛에 의한 관리도 포함한 안정성을 중시한 관리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3) 실무상 논점

(가) 취급할 수 있는 암호자산의 종류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서는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는 특성상, 그 취급하는 암호자산의 종류가 다양할 것이 상정된다. 따라서 실무운용에 있어서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안전한 운영 등을 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암호자산의 추가신청은 유연하게 인정될 것이 기대되며, 또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동향 등을 근거로 앞으로의 운영을 검토할 것이 논점이 된다.

(나) 위탁처의 취급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 있어서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된된다. 이 경우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3자가 위탁처로서 적절한지 여부, 위탁후의 위탁처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밀키의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기술면 및 태세면 양쪽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야하며, 업무위탁의 정도에 따라서 위탁처가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의 등록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등의 논의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서 업무위탁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행정당국 및 자율규제단체 등과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할 것이다.

(다) 이용자의 속성

개정자금결제법 하에서도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 관하여 법령상의 테두리로서 이용자의 속성, 이른바 프로인지 여부에 주목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자산 커스터디업에 대해서는 기관투자가나 암호자산교환업자 등이 이용자가 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속성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이용자와 비교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신탁은행에 의한 신탁재산에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인수 해금(解禁)[90]

(1) 기존의 논의

일본은 금융청 퍼블릭코멘트[91]에서 「신탁은행 등 신탁겸영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수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리스크로는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리스크나 암호자산의 관리 등에 드는 시스템 리스크 외에 이들이 표면화되었을 경우의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등이 상기되며,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표면화된 경우에는 신탁계정에 그치지 않고 신탁은행 등의 고유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신탁겸영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수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취급을 금지하였다.

(2) 2022년 6월 30일 금융청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안)」공표[92]

2022년 6월 30일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겸영법 시행규칙'이라 함) 개정안을 공표하고 퍼블릭코멘트를 실시하였다.[93]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은행이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의 인수(다만, 관리형 신탁업(이른바, 커스터디업무)에 한정됨)가 해제된다.
또 2022년 7월 22일 금융청은 '신탁회사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감독지침'(이하 '신탁회사 등 지침'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신탁은행이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을 인수할 때 유의점을 표시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다.[94]

(가) 개정전

2020년 4월 3일 공표된 퍼블릭 코멘트[95]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리스크나 암호자산의 관리 등에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 등을 가짐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가 표면화되어 신탁은행의 고유업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탁겸영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수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정리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겸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탁은행을 포함한 신탁겸영금융기관에 의한 암호자산 수탁은 금지되었다(겸영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6호 신설). 회사에서는 암호자산을 신탁재산에

90)이하의 내용은 信託銀行による信託財産に暗号資産を含む信託の引受けの解禁(https://www.noandt.com/publications/publication20220831-2/) (2022.12.10.방문).
91)ュメントの概要及びュ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https://www.fsa.go.jp/news/r1/sonota/20200403/01.pdf)(2022.12.10.방문), 69頁.
92) 「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https://www.fsa.go.jp/news/r3/ginkou/20220630-3/20220630-3.html) (2022.12.10.방문).
93) 「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https://www.fsa.go.jp/news/r3/ginkou/20220630-3/20220630-3.html)(2022.12.10.방문).
94)「信託会社等に関する総合的な監督指針」の一部改正(案)の公表について(https://www.fsa.go.jp/news/r4/ginkou/20220722/20220722.html) (2022.12.10.방문)
95)ュメントの概要及びュ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https://www.fsa.go.jp/news/r1/sonota/20200403/01.pdf)(2022.12.10.방문), 69頁.

포함한 신탁의 인수가 인정되지 않았다(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6호, 제16조의4 제1항).

한편, 은행 산하가 아닌 신탁회사에서는 이러한 은행의 고유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암호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한 신탁의 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나) 개정후

이번 겸영법 시행규칙 3조 1항 6호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은행[96]은 관리형 신탁업에 한하여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의 인수가 허용된다.[97] 또한 이에 따라 은행의 자회사인 신탁회사 및 은행 또는 그 자회사가 합산하여 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회사에 대해서도 관리형 신탁업에 한하여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의 인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후 인정되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신탁의 업무범위를 정리하면 주로 이하와 같다.

	신탁업의 유형		신탁재산의 내용	
	관리형	운용형	암호자산	암호자산관련파생상품
신탁은행	○	×	○	×
신탁은행이외의 겸영금융기관	×	×	×	×
은행산하의 신탁회사	○	×	○	×
(은행산하가 아닌)신탁회사	○	○	○	○

신탁은행이 새롭게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실시하는 신탁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업무방법서(業務方法書)에서 '인수를 실시하는 신탁재산의 종류'로서 암호자산 및 세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방법서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겸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호 가, 제2항 11호). 또한 신탁은행이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의 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것으로 하는 겸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되었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이행보증 암호자산 보유에 관한 감독지침상 유의점 등 신탁은행 고유의 점도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암호자산의 관리방법

신탁은행이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원칙

96) 겸영법 시행규칙 3조1항6호의 개정안에서는 '영 제2조제1호에 열거하는 금융기관에서는'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의해 관리형 암호자산의 수탁이 인정되는 것은 은행에 한정되며 종전대로 은행 이외의 겸영금융기관에는 암호자산의 수탁이 인정되지 않는다(신탁회사 등 지침 11-2(주) 참조).

97) 또한 신탁은행은 계속해서 암호자산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신탁을 수탁할 수 없다.

적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암호자산은 '상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은 전자기기, 전자적 기록매체 및 기타 기록매체(문서 및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른바 콜드월렛)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콜드월렛 이외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암호자산(단, 그 관리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암호자산의 5%가 상한)에 관해서는 이른바 핫월렛에 의한 관리도 인정되고 있다(겸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핫월렛 관리를 할 경우 신탁은행은 유출 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핫월렛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호자산과 동종·동량의 암호자산(이행보증암호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겸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이 점에서 신탁은행은 은행으로서 주요 은행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또는 중소·지역금융기관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이와 함께 이하 '은행 등 감독지침'이라 함)의 적용을 받지만, 은행 등 감독지침은 암호자산의 위험에 비추어 '은행그룹에 의한 암호자산 취득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8] 신탁은행이 암호자산을 핫월렛으로 관리한 경우 위와 같이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서 이행보증 암호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행보증 암호자산의 보유는 은행 등 감독지침 규정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탁회사 등 지침 11-2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공표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겸영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춘 수정 외에 아래 기재가 추가되어 은행 등 감독지침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해졌다.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신탁을 영위하는 경우, 은행인 신탁 겸영금융기관에 의한 이행보증 암호자산의 보유는 주요 은행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V-6-1 및 중소·지역금융기관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Ⅲ-4-13-1에 규정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은행계정에 미치는 위험에 비추어 특히 주요 행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V-6-2③ 및 중소·지역금융기관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Ⅲ-4-13-2③에 기재한 점에 유의한다.」

또 상기 신탁회사 등 지침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행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 V-6-2③은 이하와 같이 정하고 있어, 아래의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은행그룹의 업무에서 암호자산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취득하는 암호자산의 양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 범위로 하는 등 적절한 방침이 정해져 있는가. 또 암호자산 보유에 대해서도 해당 암호자산의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는 등 적절한 처분을 도모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가. 또 은행그룹에서는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암호 자산의 취득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가.」

또한 신탁회사 등 지침에는 신탁회사가 암호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한 신탁을 인수할 때의 착안점이 기재되어 있지만,[99] 신탁은행에도 해당 유의점이 준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100]

---

98) 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Ⅴ－６－１、中小・地域金融機関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Ⅲ－４－１３－１.

99) 信託会社等指針３－５－１（５）参照.

100) 신탁회사 등 지침 11-5에 의해 신탁회사와 관련된 신탁회사 등 지침 3-5의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은행에 준용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4) 앞으로의 전망

본 개정에 의해 신탁은행에 의한 암호자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실시하는 신탁의 인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관리형 신탁업에 국한된다고는 하지만 신탁을 활용한 새로운 암호자산 서비스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 향후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신탁은행이 커스터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는 의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암호자산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암호자산 교환업자나 은행그룹으로부터 독립된 신탁회사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신탁은행이 암호자산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투자가 보다 안심하고 암호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투자자층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국내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종전의 일본의 암호자산 법제는 개인투자자 보호에 편중되어 있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유연성·기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신탁은행에 의한 암호자산 커스터디 업무의 해금이나 암호자산 상장심사절차의 재검토를 위한 대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암호자산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쉬운 규제환경이 정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I. 우리법에 대한 시사점